

국민과 함께하는 국세청 40년
미래를 향해 세계를 향해



스리랑카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0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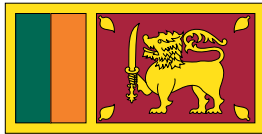


국세청
www.nts.go.kr



스리랑카 개관

“ 오른쪽의 사자는 이 동물이 스리랑카의 종주(宗主)였다는 고사(故事)에서 유래한 것으로, 칼을 가진 사자는 전인구의 70%를 차지하며 주로 불교를 믿는 싱할리족(族)이 사자의 자손임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네 귀퉁이의 보리수 잎은 불교국이라는 상징이며, 이슬람교·힌두교도의 소수민족을 초록과 주황의 2색 줄로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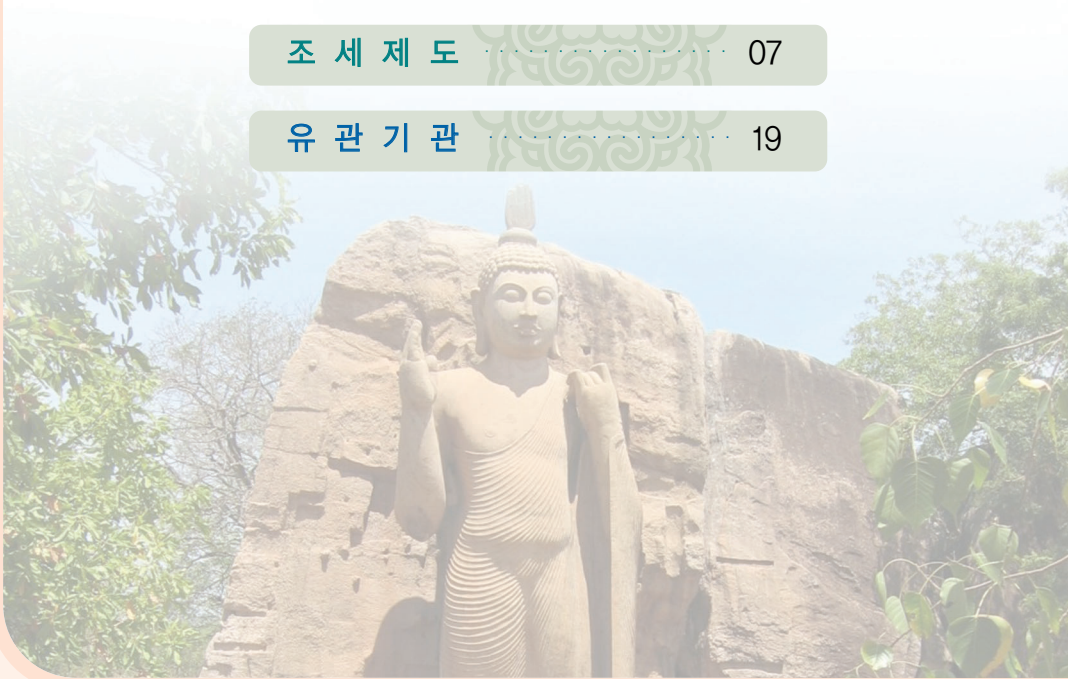


스리랑카 개관 03

투 자 절 차 04

조 세 제 도 07

유 관 기 관 19



국 명 :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의 회 : 단원제(225명)

면 적 : 65.6천 km²(남북 간 거리 435km, 동서간거리225km)

수 도 : 콜롬보

1인당 GDP (2004년) : US\$ 1,026(GDP : US\$ 198억)

교 역 ('04) : 수출 US\$ 5,390백만, 수입 US\$ 7,158백만

인 종 : 싱할리족(74%), 타밀족(18%), 무어족(7%)

종 교 : 불교(70%), 힌두교(15%), 기독교(8%), 이슬람교(7%)

주요언어 : 싱할리어, 타밀어, 영어

기 후 : 열대 몬순기후

환 율(달러당, 2004년말) : Rs101.2





투자절차

투자환경



- **일반**
90년대초 국내임금상승 및 인력확보 곤란 등으로 인해 노임이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갖춘 스리랑카가 투자지로 부각
- **장점**
 - 경제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외국인의 완전 소유권 인정
 - 투자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면세혜택 및 외환관리상 특혜제도
 - 단순저임의 노동력 활용
 - 온순한 국민성과 영어권으로서의 언어상 이점
 - 떠오르는 인도를 배후로 한 서남아 교두보로서의 지리적 이점
- **단점**
 - 83년부터 계속되는 인종분규로 인해 정치, 사회적 불안요인 상존
 - 낙후된 산업수준으로 인해 원·부자재 및 부품의 현지조달 애로
 - 도로, 통신, 전력 등 사회간접시설 취약
 - 단순 저임금 노동력 외에 고급 기능인력의 확보 곤란
 - 빈약한 부존자원으로 인한 현지 조달자원 한정

투자정책과 법규



- 스리랑카는 낙후된 제조업분야의 성장, 수출증대, 기술개발, 고용증대, 생필품의 자급자족 등을 목적으로 수출지향 산업육성을 적극 추진
- 이를 위해서 1978년 경제위원회(GCEC, 현 BOI¹⁾)를 설치하였으며, 헌법에 외국인 투자보호 명문화 등 각종 투자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
- 1995년도 투자청(BOI)이 발표한 신규 인센티브제도는 일부 내용 수정을 거쳐 2004년 현재까지도 유효하며 대체로 투자분야를 구분하여 최저 5년에서 15년까지 면세기간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기술(Advanced Technology)에 대한 인센티브에 중점
- 스리랑카 정부는 내외의 투자자들에게 매우 광범위한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고, 우대조치는 제도적으로 2개 종류(BOI법 17조에 따른 우대조치, 통상의 국내법상 우대조치)가 있으며 기업은 이들 중 어느 한쪽의 우대조치 수혜가 가능

1) the Board Of Investment의 약자(이하 BOI라 칭함)



외국인 투자기업 형태



■ 현지법인

영업과 마케팅에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선택하는 형태로서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품목 구조 및 재무 구조가 매우 우수해야 하며 철수 등의 위험성도 거의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과 비용이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 합작회사

스리랑카 정부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진출 방식으로 현지 업체와 한국 업체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이며 이런 경우 입찰에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현지 사정에 능통한 현지 기업과의 공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국과 문화적, 사회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국가의 경우 유용한 진출 방식입니다.

■ 지점회사

항공사와 은행들이 주로 사용하는 진출 방식으로 해외에서 그다지 많은 업무가 필요하지 않고 본국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기업에서 유용한 진출방식입니다. 현지 법인 설립보다는 약간 소극적인 진출 방법으로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철수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연락사무소

직접적인 영리가 목적이 아닌 본사와의 연락 및 국내 파트너와의 업무 협조 등을 이유로 진출해 있는 회사들을 말하며 소수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는 유동성이 큰 면이 있습니다.

조세제도

법인세



● 일반

- 주된 사업장소재지 또는 등록된 본점소재지가 스리랑카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스리랑카 원천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세율

가. 내국법인

과 세 소득 (Rs)	조정세율 (%)	현행세율 (%)
5백만 이하	15	20
5백만 초과		
등록된 법인 - 처음 5년간	33.33	30
등록된 법인 - 그 이후	35	30
그 외 법인	35	32.5

- 조정세율은 HREF²⁾에 기부되는 금액이 포함된 세율

나. 외국법인

과 세 소득 (Rs)	조정세율 (%)	현행세율 (%)
5백만 이하	15	20
5백만 초과	33.33	32.5

2) Human Resources Endowment Fund의 약자(이하 HREF라 칭함)



과세대상소득의 결정

가. 일반

- 과세대상소득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규칙에 부합되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발생과 관련된 제비용은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항목이 아니면 공제대상이나 자본관련비용, 개인적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공제대상비용

- 회사는 정부와 승인된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부금액을 공제대상비용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공제대상비용은 산출된 소득의 20%로 제한됩니다. 정부에 대한 기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전부 공제가능하나, 2004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Rs 2백만을 초과해야 합니다.

다. 재고자산

-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원가와 순실현가치금액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며, 선입선출법 혹은 가중평균법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라. 감가상각

- 감가상각은 회계연도 기간 중 현재 자산의 소유자가 공제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자 산	적 용 율 (%)
건물	6.6
다리, 도로, 수로	6.6
기계 및 설비	12.5
사무실 집기비품	12.5
상업용 차량	20.0
가 구	20.0
컴퓨터	25.0
전기장비	25.0
무형자산(영업권 포함)	10.0

마. 이월결손금

- 회계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총 법정소득금액의 35%를 한도로 다음 사업연도 소득과 상계가능하며,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 등에서 발생한 손실 : 7년간
 - 농업부문에서 발생한 손실 : 12년간

바. 이전가격

- 중대한 가격의 차이가 인위적 조작으로 간주될 경우 과세당국은 과세목적상 인정될 수 있는 가격으로 소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

- 스리랑카는 한국을 비롯한 29여 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 일반

- 스리랑카에 거주하는 개인은 누진과세에 의해 최고 35%까지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BOI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경우 법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동안 1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고 적용기간은 BOI로부터 획득한 우대조치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 세율

가. 거주자

과 세 소 득 (Rs)	적 용 세 율 (%)
300,000까지	5
300,001~500,000	10
500,001~700,000	15
700,001~900,000	20
900,001~1,100,000	25
1,100,001~1,600,000	30
1,600,001~	35

- 종전까지는 최고세율이 6단계(Rs 1,100,000)로 30% 세율이 적용

나. 비거주자

과 세 소 득	조정세율(%)	현행세율(%)
주력회사 - 처음 5년간	15	15
조세감면후 6년	20	15
그 이후	거주자와 동일 세율 적용	
일반 회사 - 처음 3년간	15	15
다음 2년간	20	15
그 이후	거주자와 동일 세율 적용	

- 주력회사란 BOI에서 승인된 업체나 투자금액이 Rs 5백만을 초과하는 회사





부가가치세



● 일반

- 스리랑카는 2002년 8월부터 기존의 복잡한 간접세 체계를 개선하여 부가가치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거법은 Value Added Tax No 14 of 2002이며 집행기관은 국세청(Department Of Inland Revenue)으로 세율은 0%, 10%, 20%로 분류됩니다.
- 0% : 쌀 및 주식을 포함한 미가공식품, 의약품, 서적, 의료장비 등의 제품과 교육비, 기초전력, 주거, 의료 등의 기본 서비스
- 10% : 가공식품, 물, 가스, 유류 등의 생필품과 승합차, 기계류,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제품과 건설, 호텔, 육상운송 등의 서비스분야
- 20% : 상기 이외 모든 분야
- 2004년 1월부터 10%, 20%로 구분되어 있던 세율을 15%로 단일화하였습니다.



스리랑카 세법관련 최신 주요 개정사항



스리랑카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특히 유념하여야 할 세무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 과세대상소득 Rs 500만(5만달러 상당) 이하 중소기업은 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
- 과세대상소득 Rs 500만(5만달러 상당) 초과기업은 세율을 35%로 인상
- 게임, 복권사업 소득 및 이익에 대해서는 세율을 40%로 정함
- 콜롬보 및 감파지구 외곽에서 설립된 기업은 법인세를 5~10년간 면제

● 개인소득세

- 소득구간을 세분화해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 저소득자는 낮은 세율, 고소득자는 높은 세율 적용

● 이전가격 및 과소자본세제 법제화

- 이전가격
 - 독립기업간 거래 원칙 적용을 법제화
- 과소자본 규제
 - 제조업 부채비율 2 : 1, 기타산업 부채비율 3 : 1



● 기타 부가가치 관련

- 은행 지급보증의 경우 수출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5일 이내에 환급
- 국내에서 조달한 수출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예
- 공항내 부가가치세 환급시스템 도입
- 세관에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율은 CIF에 더하여 7%로 수정
- 콜롬보 및 감파지구 밖에 소재한 산업용 신 플랜트 및 기계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스리랑카투자청에 의한 우대조치는 1995년 11월에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은 2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1) 첨단기술,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수출산업의 다변화 촉진과 (2) 대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하려는 데 있습니다.

1.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 적용대상

- 물품의 제조 혹은 서비스 제공시 신규 디자인, 형식, 과정이 도입되는 기술
- 지금까지 스리랑카에 도입된 적이 없는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 현재는 가공된 형태로 수입되고 있으나 원재료의 스리랑카내 사용 가능한 가공기술

● 우대내용

- 20년간에 걸쳐 1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고 외환관리법상의 적용을 면제받으며 사업관련 물품의 수입 혹은 국내조달품에 대해서는 수입세, 수출세, 물품세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2. 수출지향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 적용대상

- 매출액의 70%이상을 외화로 수취하는 서비스업종

● 우대내용

- 20년간 법인소득세 15%의 우대세율적용, 외환관리법의 적용면제, 사업관련물품의 수입시 국내조달에 부과되는 수입세 면제, 물품세에 대한 면세혜택이 부여됩니다.





3. 대규모 사업

● 적용대상

- 총 사업비가 Rs 5억 이상의 신규사업

총 사업비 (Rs)	면세기간
5억~15억 미만	10년
15억~ 25억 미만	12년
25억~ 50억 미만	15년
50억 이상	20년

● 우대내용

- 수출지향기업에 관해서는 기계, 원료의 수입에 대해서 수입세, 매출세, 물품세가 사업의 존속기간 중에 면제되며, 면세기간 종료 후에도 법인소득세 15%의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4. 소규모인프라 사업

● 적용대상

- 창고건설, 환경관련사업, 데이터, 음성통신, 발전, 공업단지개발, 주택건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

● 우대내용

- Rs 1억2500만~Rs 2억 4900만 : 7년간 15%의 법인소득세율 적용
- Rs 2억5000만~Rs 4억 9900만 : 10년간 15%의 법인소득세율 적용
- Rs 5억 이상 : 대규모 사업 우대조치 적용

5. 관광, 레크리에이션, 레저사업

● 적용대상

- 호텔, 레크리에이션시설, 기타 관광·레저 관련 산업

● 우대내용

- 사업비가 Rs 1천만이상일 경우 15년간 우대법인소득세율 15%가 적용되고, 기계, 건설자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세 물품세가 사업시행 기간 동안 면제되며 외국인 종업원의 개인소득세는 사업시작 후 3년간 15%로 경감됩니다.

6. 농업관련사업, 어업, 낙농, 축산개발사업

● 적용대상

- 축산, 낙농, 비전통작물, 해양 및 연안양식어업, 농산물가공, 농산물의 수확, 저장을 영위하는 사업

● 우대내용

- 5년간 면세혜택이 부여되고 그 후 생산고의 90%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5%의 우대 법인소득세가 적용됩니다.

7. 교육훈련시설

● 적용대상

- 정보처리, 기술훈련, 섬유, 봉제업분야의 교육훈련시설

● 우대내용

- 10년간에 걸친 법인소득세 15%의 우대세율 적용, 사업시행 기간 동안의 수입기계, 재료에 대한 수입세, 물품세 면제가 부여됩니다.



8. 외국인투자제한분야

현재 스리랑카의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투자제한은 비교적 적은 편으로 일부 투자 제한분야, BOI이외의 정부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금지분야

- 자금대부업
- 전당포업
- 어업(연안)



BOI외 정부기관의 승인 필요분야

- 항공운송
- 연안해운(외자비율이 제한)
- 군용품, 의약품, 화폐 등의 제조 등과 같은 국가에 민감한 사업
- 복권업
- 보석에 대한 대규모 상업적 채굴

BOI의 조건부 승인 가능분야

- 국제 수입쿼터에 따른 수출용 제품의 생산 홍차, 고무, 코코넛, 코코아, 쌀, 설탕, 향신료의 재배와 1차 가공, 용수공급
-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의 채굴 및 1차 가공
- 해운업, 어업(심해), 주택건축, 교육
- 대중통신, 화물운송, 통관, 여행대리업

유관기관

Board of Investment (BOI)

Add : Level 26, West Tower, World Trade Center, Colombo 01, Sri Lanka.
 Tel : (+94-11) 2427000
 E-mail : <http://www.boisrilanka.org>

Ministry of Finance & Planning

Add : The Secretariat Building, Colombo 01, Sri Lanka
 Tel : (+94-11) 2484500, 2484600, 2484700
 E-mail : <http://www.treasury.gov.lk/>

Ministry of Industry and Investment Promotion

Add : Regional Industrial Service Centre, 8th Floor, Bank of Ceylon Building (BOC)
 No. 28, St. Michael Road, Colombo 03.
 Tel : (+94-11) 2435248,
 E-mail : <http://www.industry.gov.l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dd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Building, Colombo 01, Sri Lanka.
 Tel : (+94-11) 2325371 / 5
 Fax : (+94-11) 2446091
 E-mail : <http://www.slmfa.gov.lk>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Commission

Add : 276 Elvitigala Mawatha, Colombo 8, Sri Lanka.
 Tel : (+94-11) 2689345
 Fax : (+94-11) 2689341
 E-mail : <http://www.trc.gov.lk>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Tel : (02) 397-1446~8